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21호

「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8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##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# 1. 제정이유

-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(안 제4조)
- 다. 농어촌민박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해 규정(안 제5조)
- 라.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

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 
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.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118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#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촌민박사업”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촌민박사업자”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 및 대상)**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홍보 마케팅 사업
2.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, 컨설팅 지원 사업

3. 안전·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
4. 법인·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고 법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자
2.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되고,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(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)

**제5조(보고·정산)**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산보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도·감독)**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도·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·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·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

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